

의안번호	2208679
의 퇴 인	김준혁 의원
회 답 일	2025.06.23.
추계번호	25C1307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교육 교류 협력 지원 2. 외국인 및 내국인 대상 국제장학·국제교류 지원 3. 외국어 공교육 지원 및 특수외국어 지원 4. 고등교육 해외 진출 및 인적교류 지원 5.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관리 6. 한국어능력시험의 개발·운영 및 연구 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지원 8. 위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조사·연구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의무규정
2	안 제7조(임원)	(제1항)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의무규정
3	안 제10조(이사회)	(제1항)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3. 제4조의 부속기관 및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 4.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 5. 정관의 변경 6.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제19조의 사업계획서 및 제20조의 실적보고서 8. 기부금품의 관리·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이 법이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및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14조(출연금)	(제1항)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재량규정
5	안 제17조(국·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재량규정
6	안 부칙 제2조(설립준비)	(제1항)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육재단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부칙 제2조 (설립준비)	(제2항) 설립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의무규정
7	안 부칙 제3조 (설립비용)	국가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사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조(임원)	
3	안 제10조 (이사회)	
4	안 제14조 (출연금)	
5	안 제17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6	안 부칙 제2조 (설립준비)	
7	안 부칙 제3조 (설립비용)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
(이하 “교육원”)을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육재단(이하 “재단”)으로 개편
하려는 것임
 - 교육원은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국제교육 교류 협력, 한국어능력시험 운
영 등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25년 기준 1,701
억 6,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 책임운영기관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함¹⁾
- '24년 4월 기준으로 24개 부처가 48개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원은 유일한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임
- * [참고자료 1] 국립국제교육원 정/현원 현황
- * [참고자료 2] 2025회계연도 국립국제교육원 예산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원의 개편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 (안 제6조) 제정안의 사업 규정에 따라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편성이 있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 확대 또는 신규 사업 편성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²⁾에 근거해 제정된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에는 교육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안 제6조의 사업 범위와 유사함
 - * [참고자료 3] 제정안과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비교
- (안 제7조 및 제10조) 제정안은 재단의 임원과 이사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이사회 운영비가 정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안 제13조는 재단의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 이용료·수수료,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원에 대한 인건비 및 이사회 운영비가 정부출연금인 아닌 다른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운영과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定員)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원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정부의 지원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정안에 따른 재단 인건비 및 이사회 운영비용이 교육원 인건비 전망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참고로,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은 사업 출연 및 인건비·경상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나, 동 소속인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사업에 대한 출연만이 이루어짐

* [참고자료 4]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장학재단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안 제14조) 제정안에 따른 재단 출연금이 교육원의 예산편성액을 상회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에 따라 이루어질 사업 내용, 조직 구성 등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산출이 곤란함
- (안 제17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유상대부가 계획된 국·공유재산을 재단 설립 목적으로 무상대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무상대부될 재산, 해당 재산의 임대료·사용료 등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추계가 어려움
 - 참고로, 제정안 부칙 제5조³⁾는 교육원의 재산·권리·의무가 재단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제정안 부칙은 교육부장관이 재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재단 설립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나, 재단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재단이 수행할 사업, 조직 구성과 같은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립준비위원회의 운영비용 및 재단 설립비용의 추계가 곤란함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3) 안 부칙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의 명의를 재단의 명의로 본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국립국제교육원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암예	특정직			일반직						계약직		합계
	원장	교육 연구관	교육 연구사	소계	3·4급	4급· 장학관	4·5급	5급	6급 이하	소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정원	1	3	16	19	1	2	2	7	41	53	65	—	138
현원	1	4	13	17	1	2	2	7	41	53	54	28	153

주: 1. '25.1.1 기준

2. 기간제 근로자는 정원이 존재하지 않음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참고자료 2] 2025회계연도 국립국제교육원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4년 예산(A)	'25년 예산(B)	증감	
			(B-A)	(%)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154,556	170,168	15,612	10.1
국립국제교육원 인건비	6,091	6,159	68	1.1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	1,465	1,777	312	21.3
총액대상	550	589	39	7.1
총액비대상	915	1,188	273	29.8
주요사업비 합계	147,000	162,232	15,232	10.4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119,093	134,464	15,371	12.9
Global Korea Scholarship	114,726	130,096	15,370	13.4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교류 지원	112,163	127,529	15,366	13.7
우수외국인 유학생 지원	2,563	2,567	4	0.2
교원 해외 진출 사업	4,367	4,368	1	-
학생 교육 교류 지원	13,801	14,054	253	1.8
국비유학생 선발과건	5,490	6,545	1,055	19.2
한일 교육 교류 협력 사업	5,687	5,235	△452	△7.9
한일 공동고등교육	3,783	3,521	△262	△6.9
한일 청년 인재 양성	1,904	1,714	△190	△10.0
한국 유학 홍보	2,053	1,643	△410	△20.0
청소년교류 지원	571	631	60	10.5
한일고교생 교류	198	262	64	32.3
한일 상대 국어 선택 고교생 교류	121	117	△4	△3.3
한중 고교생 교류	252	252	-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2,920	2,427	△493	△16.9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1,946	1,722	△224	△11.5
영어 교육 센터 지원	890	963	73	8.2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	8,350	8,602	252	3.0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6,546	6,786	240	3.7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선발 지원	970	973	3	0.3
연수 시설 운영	391	397	6	1.5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초청 활용	327	330	3	0.9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운영	116	116	-	-

자료: 국립국제교육원

[참고자료 3] 제정안과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비교

제정안 제6조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제6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교육 교류 협력 지원 2. 외국인 및 내국인 대상 국제장학·국제교류 지원 3. 외국어 공교육 지원 및 특수외국어 지원 4. 고등교육 해외 진출 및 인적교류 지원 5.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관리 6. 한국어능력시험의 개발·운영 및 연구 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지원 8. 위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조사·연구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7조(직무)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외국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공무원 등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외국어 공교육 지원 8.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참고자료 4]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장학재단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참고표 1] '24년 동북아역사재단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항목	'24년 예산	항목	'24년 예산
일반회계 수입 계	16,616	일반회계 지출 계	16,616
정부출연금	15,672	사업비	5,443
사업비	5,443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658
인건비	8,233	고조선·고구려·발해 연구	395
경상비	2,940	북방사연구	103
자채수입	(944)	중국 역사·문화 정책 연구	160
사업 외 수입	219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1,336
기타수입금	219	일제 침탈사 연구	1,276
이자수입	31	일본 근대 산업 유산 연구	60
잡수입	188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458
이월금	725	독도·동해 연구 및 확산	458
2022년도 이월금	238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324
2023년도 이월금	487	역사화해 모색 연구	324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	900
		동아시아사 교원 연수	52
		국민대상 역사 교육	18
		독도지킴이 학교 지원	160
		독도체험관 관리 운영	670
		교류 및 홍보 사업	625
		동북아역사교양총서 발간	60
		영문저널 발간	140
		역사·영토 현안 홍보	278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147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	494
		역사자료 확충 및 기록물 관리	150
		다자협 플랫폼 및 전산관리 운영	344
		연구관리 및 지원	123
		연구역량강화 및 종합지원	30
		정기간행물 및 학술서 발간	93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525
		연구 성과 국제적 확산	415
		글로벌 연구 협력	110
		인건비	8,233
		경상비	2,940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참고표 2] '24년 한국장학재단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항목	'24년 예산	항목	'24년 예산
일반회계 수입 계	8,563,128	일반회계 지출 계	8,563,128
정부출연금	5,087,835	사업비	8,501,252
한국장학재단 출연	367,382	장학금 지원 사업	4,720,453
국가장학금	4,095,678	국가장학금	4,095,678
대학생 근로장학금	469,125	대학생 근로장학금	469,125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57,626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57,626
희망사다리 장학금	96,004	희망사다리 장학금	96,004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운영비	2,02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운영비	2,020
차입금	1,745,967	학자금대출사업	3,463,796
채권 발행	1,745,967	학자금 대출 공급	2,197,774
융자원리금 회수	1,715,873	채권원리금 상환	1,264,066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원금회수	802,041	채권 관리 부대비용 등	1,956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자회수	60,057	학자금 대출 지원사업	273,975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금회수	750,820	ICL 대납이자	185,629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회수	102,955	ICL 이자면제	16,183
자체수입	8,674	일반대출 균이자면제	1,000
예치금이자 등	407	일반대출 특별상환유예	10,839
기타 재원 활용	-	일반대출 이차보전	32,835
신용보증 기본재산	-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27,489
구상채권회수	7,420	고유 사업	42,118
전세보증금 등 자체수입	847	보증 사업	910
계정 및 회계 간 내부거래	-	재단 운영비	54,959
전기이월	4,779	인건비	40,959
		경상경비	10,330
		기타 지출	3,670
		예비비	-
		경영 평가 성과급	-
		증원 인건비	-
		계정 및 회계 간 내부거래	-
		차기 이월 등 기타지출	6,917

자료: 한국장학재단